교수업적평가규정 4-2-6

규정번호 4-2-6
제정일자 2008.3.1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43차 개정
관리부서 교무입학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원의 기간제임용 및 승진임용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연구·산학협력·봉사실적 평가를 통하여 전문대학의 위상과 일치하는 교수의 업무 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학문발전과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교수업적평가 대상은 전체 전임교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평가영역별로 부분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단위로 매 연도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평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범위) 교수업적평가 범위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교육업적평가 : 강의와 수업참여도 및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
2. 연구업적평가 : 전공과 관련된 모든 연구 및 창작 활동
3. 봉사활동평가 : 교내외 봉사 및 수상 등 봉사활동
4. 산학업적평가 : 취업실적 및 산학협력 활동

제4조(업적심사) ① 전임교원은 연구, 교육, 봉사 및 산학부문 업적을 상시 전산입력하고, 교수업적평가표 및 내역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도 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 연구년 및 파견기간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의 교육, 봉사 및 산학부문의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③ 산학부문의 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은 일반형으로,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트랙형으로 평가받으며,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일반 전임교원도 산학협력트랙형을 선택하여 업적심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5조(평가위원회 설치) ① 교수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의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심사대상일 경우에는 총장이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업적평가자료 확인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교수업적평가 인정범위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7조(교수업적심사절차) ① 교무처는 전임교원에게 업적평가 실시 3개월 전에 평가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원은 소정양식(별지1부터 별지8까지)의 업적평가자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교무처에 제출한다.(개정 2019.12.09.,2024.7.24)

③ 평가위원회는 전임교원들이 제출한 교수업적평가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한다.

④ 교무처장은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9.12.09.)

제8조(교수업적 평가자료 제출) 교수업적평가 자료 제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업적평가 내역<별지1 서식> 및 교육업적평가표<별지5 서식>
2. 연구업적평가 내역<별지2 서식> 및 연구업적평가표<별지6 서식>
3. 봉사업적평가 내역<별지3 서식> 및 봉사업적평가표<별지7 서식>
4. 산학업적평가 내역<별지4 서식> 및 산학업적평가표<별지8, 별지 8-1 서식>
5. 증빙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제8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 ① 교수업적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교수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교원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한다.

③ 교무처장은 재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제9조(평가 관련자료의 제공) 다음 각 호의 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 시 평가대상자의 평가 대상기간 중 업적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목실 : 예배 관련자료
2. 기획실 : 기획 및 사업실적 관련자료
3. 교무처 : 수업관련자료, 인사 관련자료, 기타 업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5.12.03., 2018.08.27.)
4. 산학협력처 : 산학 및 연구실적 관련자료(개정 2018.12.10.)
5. 학생지원처 : 학생지도 및 취·창업 실적 관련자료(개정 2024.7.24., 2026.2.6.)
6. <삭제(2015.12.03.)>
7. 평생교육본부 : 평생교육강의 관련자료(개정 2025.3.31.)

8. 학술정보원 : 업적전산 관련자료(개정 2018.08.27)
9. 교수학습센터 : 교수학습법 관련(신설 2018.08.27., 개정 2019.02.25., 2022.06.08)
10. <삭제(2024.7.24.)>

제3장 교수업적 평가방법

제10조(평가 방법) 평가분야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산학업적의 분야로 대별하고, 평가는 각 분야별로 수행하되 종합평가 총점은 각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다.

제11조(교육업적 평가) ① 교육업적의 평가는 별표1의 교육업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강의시수 및 휴·보강, 강의진행, 강의평가, 교수학습방법, 학생상담, 입상지도 등을 평가한다. 다만, 강의평가에 있어서 3월1일자 재임용, 승진임용대상자는 임용예정일이 속한 학기 기준 전전학기 강의평가점수×2를 하여 평가한다.(개정 2019.12.09.)

② 교육업적점수는 년간 최대 900점 까지만 인정한다.

제12조(연구업적 평가)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별표2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연구논문, 학술논문발표, 연구보고서, 학술수상, 학술저서, 저서 및 번역서 등을 평가한다.(개정 2022.02.21.)

② 공동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률은 단독연구실적물은 100%, 2인의 경우 70%, 3인의 경우 50%, 4인 이상의 경우 30%로 한다.

③ 예·체능계는 별표2-1부터 별표2-6까지 평가기준에 의하여 연주, 발표, 대회입상, 전시회, 입상실적, 전공관련 보고서 등을 평가한다.(개정 2024.7.24.)

④ 연구결과가 완료되었으나 미발간된 실적물평가는 게재예정증명서가 있으면 인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경우에 발간된 업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평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⑥ 정년보장임용과 관련한 연구업적점수는 이공계 1400점, 인문(사회)·예체능계 1200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논문 300%를 1순위로 인정한다.

⑦ 승진임용 및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심사절차는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제16조(임용 및 심사절차)를 따른다.(신설 2019.12.09.)

제13조(봉사업적 평가) ① 봉사업적의 평가는 별표3의 봉사업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교내보직, 학생특별지도, 학습활동, 입학활동, 대학기여활동, 학회활동, 사회교육활동, 사회봉사활동, 수상 등을 평가한다.

② 봉사업적점수는 년간 최대 400점 까지만 인정한다.

제13조의2(산학업적 평가) ① 산학업적의 평가는 별표4의 산학업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취업활동, 산학협력활동, 산학교육활동, 지식재산권, 연구비수혜 등을 평가한다.(개정 2022.02.21.)

② 산학업적 중 일부항목은 별표4 및 별표4-1의 산학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연구업적에 대체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2.02.21.)

③ 산학업적점수는 년간 이공계 최대 400점, 인문(사회)·예체능계 최대 300점 까지만 인정한다.

④ 교목의 산학업적평가 점수는 찬양팀을 구성하여 교회, 타대학, 기타 위문시설 등을 방문하여 찬양 및 설교를 함으로써 음악전공 학생들의 취업 및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반영하여 연간최대점수인 300점을 인정한다.

제13조의3(업적의 인정) ① 교수업적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적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시 업적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경우 인정여부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연구년, 질병으로 인한 휴직, 파견, 출산휴가자의 교수업적평가 점수 대체인정은 다음 각 호와 별표5에 의한다.(개정 2024.4.1.)

1. 연구년, 파견, 출산휴가자의 교수업적평가점수 대체 인정 업적은 교육, 봉사, 산학업적으로 하며, 대체인정 시 각 업적항목별 평점상한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24.4.1.)
2.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의 교수업적평가점수 대체 인정 업적은 교육, 연구,봉사, 산학업적으로 하며, 대체인정 시 각 업적항목별 평점상한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개정 2024.4.1.)
3. 발령일이 3. 1, 9 .1자가 아닌 학기중 발령자는 해당학기 3. 1 또는 9. 1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동일 업적의 교수업적평가 영역 및 항목별 중복인정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02.21.)

제14조(평가기준) 각 영역별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1로 한다.
2. 연구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2로 한다.
3. 봉사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3으로 한다.
4. 산학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4 및 별표 4-1로 한다.

제4장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제15조 (삭제)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 16 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승진 및 재임용의 최저요건은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교내연구비 배정, 우수교원 및 우수학과선정, 해외연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6장 보 칙

제 17 조 (비밀유지) 평가의 결과는 우리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 18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수업적평가제심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년도 교수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27> <생략>

<28>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②·③·④·⑤, 제18조, 별표3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9> - <102>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17> <생략>

<18>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②항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별표1> 산정기준 4), 6), 10)의 “학적과”를 각각 “학적팀”으로, <별표3>의 산정기준 8)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하고, <별표3>의 8) 중 “예·체능계열”을 각각 “예술체육학부”로, “디자인계열”을 각각 “디자인학부”로, 교수업적평가표 보고서, 별지 5~8, 종합평가서 양식의 "계열“을 각각 ”학부“로 한다.

<19> - <49>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8> <생략>

<9>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산학협력처장” “취업마케팅실장”을 “산학협력처장”으로 하고, 별표3의 “디자인 및

예술체육학부”를 “예술·건강학부”로 한다.

<10>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03. 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8조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을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제14조의 “취업진로지원팀”을 “진로취업지원팀”로 변경한다.
<별표 1>, <별표 3>의 “교육개발·NCS지원센터”을 “교육혁신지원센터”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별표4>와 <별표4-1>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의 ‘강의담당시수’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책임시간 시수 ‘12시간’을 ‘9시간’으로 하고, 연간책임시수를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한다.

부 칙(학사내규) <2021.8.18.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제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교수업적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별표4-1, 별지8-1] 중 “co-op, 현장실습, 인턴십 지도”를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지도”로 한다.
<2> - <3> (생략)

부 칙<별표1, 별표4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별표4-1>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8> (생략)
<9>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의 "진로취업지원센터"를 "진로취ㆍ창업센터"로 변경한다.

제9조제9호 및 [평점산정기준]의 "교육혁신지원센터"를 "교수학습센터"로 변경한다.
<10> - <25>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별지5 ~ 별지 8-1>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별표4, 별표4-1)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별표3)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3항제1호제2호, 별표1, 별표4, 별표 4-1)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2항, 제9조제5호·제10호, 제12조제3항)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1>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되,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③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4> (생략)
<5> 교수업적평가(4-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평가관련자료의 제공)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교육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봉사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본부”로 한다.

<6> - <17> (생략)

부 칙<별표개정>

①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②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5호)

<별표 1> (개정 2016.3.1., 2017.02.27., 2017.06.20.,2020.05.25., 2020.08.31., 2021.11.29.,2022.02.21., 2022.12.12.,2023.01.20.,2023.03.30.,2024.4.1.,2026.2.6.)

1. 교육업적평가 기준

분야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기 준		평점상한	
강의	강의시수 및 휴, 보강	강의담당시수	100점 + [(강의담당시수 - 책임시수) × 10점]		100	
		강의일수	[30점 + (강의일수 - 3 일) × 10점]의 1,2학기합산		80	
		휴강 및 보강	(무단결강 및 휴·보강 고지기준 미준수 일수)× 10점		감점사항	
	강의진행	강의계획표 입력, 제출	(미입력·미제출 강좌수) × 10점		감점사항	
		담당교과목수	담당교과목수 × 30점		90	
		성적입력, 성적표 및 출석부 제출	(미입력·미제출 강좌수) × 10점		감점사항	
		원격(가상) 강의	과목당 30점		200	
		강의자료 온라인탑재 및 강의공개	과목당 30점			
		야간 및 정규 이외의 교육과정 강의	담당과목수 × 20점			
		직무역량 교과목 강의	교과목수(NCS기반, MJC기반) × 20점			
	강의평가	강의평가 점수	개인강의평가 점수화(학기별 합산)		400	
		강의평가 감점	60점 미만	1회	-50	
				2회 연속	-70	
				3회 연속	-100	
			60점 이상 ~ 70점 미만	1회	-30	
				2회 연속	-50	
				3회 연속	-70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법 개발 및 활용	산정기준 참조		80	
학생 지도	학생상담 및 지도	상담지도교수	상담지도율 50% 이상 : 80점 x 상담지도율(%)		80점	상한 80점/학기
			상담지도율 50% 미만 : 0점		0점	
	입상지도	경기, 경연 공모, 작품대회 등	입상건수 × 5점		20	
근무	근무태도	교육관계 법령준수	산정기준 참조		감점사항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산정기준 참조		감점사항	

<교육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개정
2020.08.31.,2021.11.29.2022.02.21.,2022.12.12.,2023.03.30.,2023.12.11.,2024.4.1)

1) 강의담당시수
산정예시 : 전임교원 책임시간 9시간일 때, 평교수 A가 1학기에 9시간, 2학기에 9시간을 강의했을 경우, 조정된 강의시수의 연간합계가 18시간이고, 연간 책임시수가 18시간이므로 100 + [(강의시수 - 책임시수) × 10]=100점이 되며, 최대 100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0.08.31.)

2) 강의일수
① 강의일수는 주당 강의일수를 의미한다.
② 행정처실장은 강의일수와 관계없이 평점상한을 부여한다.

3) 휴강 및 보강 : 휴강 및 보강의 감점사항은 학사지원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4) 강의계획표입력 및 제출 : 학사지원팀에서 지정한 강의계획표 입력 마감일 이전에 입력된 것만 인정한다.(개정 2018.08.27)

5) 담당교과목수
① 평가 대상 기간 중 담당한 교과목 수를 말한다.
② 학기별 동일 교과목은 1과목으로 인정한다.

6) 성적입력, 성적표 및 출석부 제출은 담당부서가 지정한 마감일까지 입력 및 제출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6.3.1.)

7) 원격(가상)강의 : 우리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원격(가상)강의를 의미한다.(개정 2016.3.1., 2023.12.11)
① 원격강좌 15주차 각 주차별 2일 이상 원격(가상) 강의 사이트에 접속 후 강의실에 입장한 경우 평점을 인정한다.
② 과목당 2개 분반 이상의 원격(가상)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위 ①의 조건을 모든 분반이 만족하여야 평점을 인정한다.

8) 강의자료 온라인탑재
① 강의자료 및 강의컨텐츠(강의내용의 일부 동영상 및 컨텐츠 제작 등)를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인터넷 사이트(이클래스, 인터넷디스크, 외부 소셜네트워크)에 탑재한 것을 의미하며 원격(가상)강의용 자료는 제외된다.(개정 2023.12.11.)
② 강의공개 : 온라인 및 강의 컨텐츠 형태로 일반인에게 한학기 수업의 80%이상 공개된 것

9) 야간 및 정규이외의 교육과정 강의

우리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한 평생교육본부 및 계약학과 강의, 야간강의(산업체위탁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강의 등) 등을 의미한다.(개정 2022.02.21.,2025.3.31)

10) 현장중심의 역량 및 직무기반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하여 강의한 직무역량 교과목(NCS기반, MJC기반)의 수를 의미한다.(신설 2016.3.1., 개정 2020.05.25., 2022.12.12.,2023.01.20)

11) 강의평가(개정 2016.3.1.)

① 강의평가는 학기별 계산하여 합산한다.

② 개인평점 = {[1학기 개인강의평가점수(A) + (A - 1학기 학과강의평가 평균점수)] + [2학기 개인강의평가점수(B) + (B - 2학기 학과강의평가 평균점수)]} × 2

예) C학과 강의평가 평균점수 : 1학기 80점, 2학기 85점

C학과 D교수 강의평가점수 : 1학기 85점, 2학기 80점

{[85+(85-80)]+[80+(80-85)]}×2 = (90+75)×2 = 330점

③ 학사지원팀에서 시행하는 평가결과만 반영한다. (개정 2018.08.27.,2023.12.11)

12) 교수학습방법 (개정 2015.12.03., 2018.08.27. 2019.02.25., 2022.06.08)

①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Teaching Table, 강의촬영분석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대면강의촬영분석 프로그램의 경우 40분 이상의 강의를 촬영하여 수업분석을 한 경우에 한함[1)]

② 교수학습법 연구 공모과제의 경우, 교수학습법 연구 및 적용을 위한 교내외 대회 등을 포함[2)]

③ 혁신교수법의 경우, MJC-ILC 등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서 매학기 교수학습센터에 신청한 수업 및 MJC-ILC(+)인증 교과목에 한함(MJC-ILC(+)혁신교수법 운영지침 참조)[3)] (개정 2025.3.31.)

• 우수사례 선정 시 건당 10점을 추가 부여한다.

※ 교수학습방법 세부 점수(개정 2025.3.31.)

세부항목		세부점수
[1)]교수학습지원프로그램		10점(건당)
[2)]교내연구/혁신대회 등		20점(건당)
[3)]혁신교수법 [MJC-ILC(+)]	개발	20점(건당)
	인증	
	유지	10점(건당)

13) 지도교수

① 상담지도교수는 매학기 성적평가기간(성적이의신청기간 포함) 종료일 시점으로 상담결과를 교수업적평가 점수에 반영한다.[성적평가기간(성적이의신청기간 포함) 종료일 이후 입력불가](개정 2017.06.20., 2017.10.25., 2026.2.6.)

② <삭제(2023.03.30.)>

14) 입상지도 : 학생을 지도하여 경쟁공모에서 입상한 경우 입상에 기여한 지도교수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산학업적평가 등 타 영역 업적과 중복 인정은 불가하다.(개정 2022.02.21.)

15)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본점수에서 감점한다(단, 행정보직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6.3.1.)

① 형사 징계 관련 대내·외 물의 : -60점

② 정직 : -50점

③ 감봉 : -40점

④ 견책 : -30점

⑤ 경고(회당) : -20점

⑥ 주의(회당) : -10점

16)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본점수에서 감점한다.(신설 2016.3.1.)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 : -50점

②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 -30점

③ 벌금 등(회당) : -10점

<별표 2>(개정 2022.02.21.)

2. 연구업적평가 기준

분 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 점
논 문 및 학술활동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500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40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4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	300
		국내일반학술지 게재 논문	100
		국내기타학술지 게재 논문	70
		박사학위논문	200
		대학 논문집	100
	학술발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00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70
		기타학술대회 발표논문	30
	위탁연구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보고서, 교내연구보고서	100
	학술수상	국제학술상	200
		국내학술상	100
저 서 및 역 서	학술저서	국제 전문 학술저서	300
		국내 전문 학술저서	200
	저서 및 역서	전공교재 및 번역서	100
		편저 및 저서개정판	50

※ 위 평점은 단독(1인)을 기준으로 한 평점임.

<연구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개정 2022.02.21.)

* 모든 연구실적물은 우리대학 소속이 명시되어야 인정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 : 국내외의 저명 학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논문 게재 당시에 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말한다.

2) 국제전문학술지 : 국제저명학술지로 인정되지 않은 국내외 전문 학술지를 말한다. 단,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평가된 학술지를 말한다.

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평가된 학술지를 말한다.

5) 국내일반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인정되지 않은 학술지 중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로서 논문 게재시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를 말한다.

6) 국내기타학술지 : 국내일반학술지로 인정되지 않은 학술지 중 학술단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말한다.

7) 박사학위논문 : 박사학위논문은 평가 인정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논문을 말한다.

8) 대학논문집 : 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를 말한다.

9)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문학술기관이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의미한다.

10)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의미한다.

11) 기타학술대회 발표논문 : 7), 8)항에 해당되지 않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의미한다.

12) 연구보고서

①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외부기관 및 교비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말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에 대해서는 50%를 인정하고 최종보고서를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3.1.)

② 연구보고서는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학술연구결과보고서를 말하며, 산학협력처에서 국고지원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결과물(연구보고서제외)은 산학업적으로 반영한다.(개정 2018.12.10.)

(결과물에 대한 연구보고서 인정여부는 학부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13) 국제학술상 수상 :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국제전문학술지 발행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것을 의미한다.

14) 국내학술상 수상 :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발행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것을 의미한다.

15) 국제학술저서 : 국외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되는 학술저서를 말한다.

16) 국내학술저서 :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 학술저서로써 ISBN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17) 전공교재 및 번역서(개정 2022.02.21.)

가) 전공교재 : 대학의 강의를 위한 전문분야 서적으로 ISBN에 등록 또는 초·중등교과서로 교과부에서 인증된 것을 말한다.

나) 번역서 : 전공분야의 학술서적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서적을 번역한 서적을 말한다.

18) 편저 및 저서개정판(개정 2022.02.21.)

가) 편저 : 전공분야의 논문 및 이론, 또는 문예 창작집 등을 묶어서 출간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서적으로서 저자 설명이 포함된 서적을 말한다.

나) 저서개정판 :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1/3이상 개정하여 출판한 사실이 인정된 개정판을 말한다.

<예·체능 및 디자인 연구부문 산정기준>(개정 2022.02.21)

1) 우리대학 소속이 명시되어야 하며 임용기간 또는 승진기간 내에 전문연주홀 또는 전문공개발표회장에서 공연, 전시, 발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16.3.1.)

2) 국내에서 인정된이라 함은 공인단체의 주최로 전국규모 이상으로 전문연주홀 또는 전문공개발표회장에서의 공연전시를 말한다.(개정 2016.3.1.)

3) 국외에서 인정된이라 함은 국제적인 규모 이상으로 국내·외의 전문연주홀 또는 전문공개발표회장에서의 공연전시를 말한다.(개정 2016.3.1.)

4) (삭제 2016.3.1.)

5) 동일한 내용 및 작품으로 전시, 발표, 공연, 연주회는 중복 인정되지 않으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6) 순회공연의 경우 1건만 인정하며, 기념행사, 초청공연 등으로 발표된 것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모든 연구실적은 프로그램원본 및 관계자료(현장사진, 실황영상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1.)

8) 대중음악공연, 예술음악공연의 경우 유료로 티켓을 판매하는 예술공연에 한하여 반영한다. 단, 음반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신설 2016.3.1.)
① 국제음반 제작물은 외국 음반 제작사 레이블의 음반으로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국내음반 제작물은 음반협회나 영상협회 등록 음반사에서 제작한 음반으로 상업적 판매가 이루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디지털 음반의 경우 음원 유통계약서 및 온라인 유료 음악사이트에 유통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9) 종교단체, 본교 또는 학과의 행사 및 공연은 봉사업적으로 반영한다.(신설 2016.3.1.)

10) 학술목적의 공연 및 전시만을 평가하며 본인 전공 및 직무분야 이외의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신설 2016.3.1.)

<별표 2-1>(개정 2016.3.1.)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음악분야)

구 분	연 구 업 적	점수	비 고
작 곡	개인 발표회 및 작곡집	150	
	2인 발표회 및 작곡집	100	연간 5회 인정
	3인 이상 발표회 및 작곡집	70	
성 악	그랜드 오페라 및 뮤지컬 주연	150	
	그랜드 오페라 및 뮤지컬 조연, 오라토리오 독창	100	연간 5회 인정
	독창회	150	
	독창 협연	100	
	2인 발표회	100	연간 5회 인정
	3인 이상 발표회	70	
연 주 (협연/듀오/실내악)	국제 독주회, 독창회	200	
	국내 독주회, 독창회	150	
	1인 협연	150	
	2인 연주	100	연간 5회 인정
	그 이외의 연주(전체프로그램)	50	
반 주	전체프로그램	100	연간 5회 인정
	2인 공동 반주	70	
	3인 이상 공동 반주	50	
음 반	1인 음반출간	150	
	2인 공동 음반출간	100	연간 5회 인정
	3인 이상 공동 음반출간	50	
수 상	공인된 국제 음악상	200	
	공인된 국내 음악상	100	

<별표 2-2>(개정 2016.3.1.,2022.02.21.)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디자인분야)

구 분	연 구 업 적		점수	비 고
전시	국제	개인전	200	
		2인전	150	
		3인전	100	
		단체전	70	
	국내	개인전	150	
		2인전	100	연간 5회 인정
		3인전	70	
		단체전	50	
공모전 및 수상	국제	특선 이상	200	
		입선	100	
	국내	전국 특선이상	100	
		전국 입선 이상	70	연간 5회 인정
초대전	국제전		100	
	국내 전국 단위		50	연간 5회 인정
작품	미디어	장평영상	150	
		단평영상, TV방영 및 CF, 미디어개발, DVD미디어기획·제작, 출판 저작	100	연간 5회 인정
	디자인	개발 및 설계, 공간계획	100	
평론	국제 전문지 평론		100	
	국내 전문지 평론		70	연간 5회 인정

<별표 2-3>(개정 2016.3.1.)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체육분야)

구 분	연 구 업 적	점수	비 고
심판자격	국제공인 심판 및 지도자 자격 취득	200	
	국내공인 심판 및 지도자 자격 취득	100	
대회참가	올림픽 출전	200	
	국제대회 입상	150	
	국내대회 입상	100	연간 5회 인정
평론	공인된 국제 체육 전문지 평론	100	
	공인된 국내 체육 전문지 평론	70	연간 5회 인정
수상	공인된 국제 체육상	200	
	공인된 국내 체육상	100	
발표회	국제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	200	
	국제체육단체에서 단체연구 발표	100	
	국내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 발표	100	
	국내체육단체에서 단체연구 발표	70	연간 5회 인정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수회 강사(40시간 이상)	100	

<별표 2-4>(개정 2016.3.1.,2022.02.21)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실용음악분야)

구 분	연 구 업 적	점수	비 고
작 곡	개인 작곡 발표회	150	
	관현악곡, 교향곡, 오페라, 뮤지컬, 오라트리오발표회	150	
	8인 이상 실내악 발표	120	
	7인 미만 실내악 발표	100	연간 5회인정
	합창곡 발표, 독주곡 발표, 영상음악·레코딩, 컴퓨터음악, 멀티미디어음악	70	
	가곡발표	50	
공 연	뮤지컬 및 음악회 공연 주연	150	
	뮤지컬 및 음악회 2인 공연	100	연간 5회 인정
	뮤지컬 및 음악회 3인 이상 공연	70	
음 반	1인 음반출간 및 작곡집	150	
	2인 공동 음반출간 및 작곡집	100	연간 5회 인정
	3인 이상 공동 음반출간 및 작곡집	50	
수 상	공인된 국제 음악상	200	
	공인된 국내 음악상	100	
기 획	공연 기획, 제작, 연출	70	연간 3회 인정

<별표 2-5>(개정 2016.3.1.,2022.02.21)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연극영화분야)

구 분	연 구 업 적		점수	비 고
공 연	연출		200	
	기획,제작 또는 예술감독,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150	
	희곡, 시나리오 1편(장편)		100	연간 5회 인정
	희곡, 시나리오 1편(단편)		80	
	연극출연 주연 1편		150	
	연극출연 조연 1편		100	연간 5회 인정
작 품	장편영화	연출, 주연	200	
		제작, 기획	150	
		조연	100	
	단편영화, TV방영	30분 이상	150	연간 5회 인정
		30분 미만	100	
수 상	국제 저명 연극, 영화제 대상		200	
	국제 저명 연극, 영화제 입상		150	
	국내 저명 연극, 영화제 대상		120	
	국내 저명 연극, 영화제 입상		100	연간 5회 인정
평 론	국제 저명 연극, 영화 전문지 평론 게재		100	
	국내 저명 연극, 영화 전문지 평론 게재		70	연간 5회 인정
기 타	방송프로그램 출연, 공인된 영상매체실적		50	

<별표 2-6>(개정 2016.3.1.)

연구부문 평가항목별 배점표(문예창작분야)

구 분	연 구 업 적		점수	비 고
전시	국제	개인전	200	
		2인전	150	
		3인전	100	
		단체전	70	
	국내	개인전	150	
		2인전	100	
		3인전	70	연간 5회 인정
		단체전	50	
작품	공연 및 상영	장막극, 장편영화, 연속극	200	
		단막극(TV,연극), 단편영화	100	
	문학작품집 발간		100	연간 5회 인정
	공인된 문예지	소설, 희곡, 시나리오, 동화	70	
		시, 동시, 수필	40	
평론	공인된 국제 평론 전문지 게재		100	
	공인된 국내 평론 전문지 게재		70	연간 5회 인정
수상	공인된 국제 문학상		200	
	공인된 국내 문학상		100	

<별표 3>(개정 2016.3.1.,2022.02.21)

3. 봉사업적평가 기준

분야	항 목	세 부 항 목	평가기준 (평점산정기준)	평점	평점상한
교내 봉사	보직활동	교무위원, 부속기관장, 연구소장 및 간사, 학과장, 전공주임, 부설센터소장 및 간사, 부단장 등	건당 배점	50	50
	위원회등활동	각종 위원 회 위원 및 연구회 회원	건당 배점	25	50
	학생특별지도	튜터링 지도, 학생단체(동아리) 지도교수	6개월 이상	50	100
		학교 행사 참여	1일 × 6점	최대60	
	학습활동	- 강의 : 교내 학술강연 및 교양강좌강연 - 참석 : 교내에서 각종연수 및 특강참석	건당 배점	20	100
		교내 예배 참석	건당 × 20점	최대60	
		교내 각종 성희롱, 폭력 예방교육 참석	건당× 30점		
	입학활동	입학감독 및 진행위원	1일	20	40
		학교 및 학과홍보 활동	건당 배점	20	60
	대학기여활동	대학발전 및 대외교류 사업 참여, 학과발전사업 및 행사 참여	건당 배점	20	60
교외 봉사	학회활동	국제 또는 국내학회 임원 국제 또는 국내학회 위원	6개월 이상	25	100
		국제 또는 국내학술회의 사회, 토론, 발표	건당 배점		
	사회교육활동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활동	3개월 이상	30	60
		교외 초청 강연, 발표	건당 배점	20	100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회세미나 참석			
	사회봉사활동	- 고시출제, 심사, 평가채점 - 교양서 저술 및 정기간행물 기고 - 언론매체기고 및 출연 -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봉사	건당 배점	25	100
수상	포상 및 표창	국가기관표창, 지자체표창, 명지학원표창	건당 배점	20	40

<봉사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개정 2022.02.21.,2023.12.11)

1) 보직이 중복되는 경우는 상위 점수의 보직만 인정한다.

2) 위원회등 활동 : 우리대학 위원회설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학습연구회 및 행정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연구회를 말한다.

3) 학생특별지도(개정 2015.12.03., 2018.08.27., 2022.06.08)

① 튜터링 지도 : 교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튜터링 지도에 한하여 인정됨(50점)

※ 1개 학기를 진행할 경우 25점 인정

※ 튜터링 지도는 담당교과 교수로서 조별면담 및 학습지도에 참여

② 학생단체(동아리) 지도교수 : 학교에 등록된 학생단체, 동아리 지도교수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연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6개월 미만인 경우 근무월수로 평가)

※ 산학협력처 주관 창업동아리 지도교수는 산학업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22.02.21.)

③ 학내 각종 행사 참여 : 학내 행사에 참여하고 개인활동일지에 입력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1일당 6점으로 최대 60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22.02.21.)

※ 인정되는 학내 행사 : 입학식, 졸업식, 학과오리엔테이션 및 MT, 신입생대학생활안내, 신입생 환영회, 체육대회, 축제 (이외의 행사 참여는 불인정)(개정 2022.02.21.)

4) 학습활동

① 교내 학술강연 및 교양강좌 : 우리대학에서 인정한 각종 교내 강연회에서 강연한 경우 인정한다.

② 교내의 각종연수 및 특강참석 :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연수 및 특강에 참석한 경우 인정한다.
(학생대상으로 대학에서 인정하는 특강에 참석한 경우 포함 - 연 2건 제한)(개정 2022.02.21.)

③ 교내 예배 참석 : 신년교례예배, 개강예배, 부활절예배, 추수감사예배, 성탄예배에 참석한 경우 인정한다.

④ 교내 각종 성희롱, 폭력 예방교육에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건당 30점을 가점한다.(신설 2016.3.1.)

5) 입학활동(개정 2018.08.27)

① 입학감독 및 진행위원 : 우리대학 입학전형기간 중 입시감독 및 진행위원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며 1일당 20점으로 인정한다. [평생교육본부(계약학과) 포함](개정 2025.3.31.)

② 입학홍보 활동 : 우리대학 및 학과 입학홍보를 위한 고교방문 활동 또는 교내·외의 입시설명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 한한다. [평생교육본부(계약학과) 포함](개정 2025.3.31.)

6) 대학기여활동

① 대학발전 및 대외교류사업 참여 : 우리대학 발전 및 대외교류사업(사업계획서작성·발표, 국제교류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② 학과발전사업 및 행사참여 : 학과발전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말하며 평가는 부서장 또는 학과장이 확인한 교내활동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한다. (학과발전계획참여, 학과

체육(등반)대회, 취업특강, 학보사기고, 행사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등)(개정 2022.02.21.,2023.12.11)
③ 학과회의 및 교·강사협의회, 산학협력처에서 지원받은 사업(산학협력협의회 등), 사은회 및 스승의날 참석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2.02.21.)
④ 교양과 및 행정부서 소속 전임교원은 상한점을 부여한다.(개정 2018.12.10.,2023.12.11)

7) 학회활동
① 국제 또는 국내학회 임원 :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국제 또는 국내학회 위원 : 편집위원·학술위원·평 위원을 말하고, 동일단체의 임원 및 위원직을 중복 수행할 경우 1건만 인정한다. 단, 지부학회인 경우 지회장만 위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학술단체에 준하는 단체의 임원 및 위원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2.02.21.)
③ 국제 또는 국내 학술회의 사회, 토론, 발표 : 국내외에서 공인된 기관이나 학회에서 주최하는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사회자 또는 토론자, 발표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논문발표자인 경우 연구 분야 국내학술발표대회 업적도 인정한다. 단,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회세미나 참여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2.02.21.)

8) 사회교육활동
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에 위촉되어 자문활동을 3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인정한다.
② 교외 초청 강연, 발표는 국제기관,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타 산업체의 초청으로 강연 혹은 발표한 경우를 의미한다.(개정 2022.02.21.)
③ <삭제>
④ 전임교원학술활동지원 지침에 의한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회세미나(예술·건강학부는 공인된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관련부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1.)

9) 사회봉사활동
①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전문학회 등에서 출제, 심사(심의), 평가, 채점 등의 위원활동으로 동일한 기관, 동일날짜의 활동은 1건으로 인정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자문활동과 중복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22.02.21.)
② 연구업적에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체의 저술을 의미한다.
③ 중앙, 지역의 일간신문, 중앙잡지의 논평, 서평, 칼럼 등을 기고하거나 방송매체에 사회자, 토론자, 출연자 등으로 출연한 경우
④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봉사단체, 교회 등에서 장이 발행한 것으로 최소8시간 이상 봉사실적 있는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기관, 동일날짜 봉사실적은 1건으로 인정한다.

10) 포상 및 표창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명지학원(이사장, 총장) 표창을 의미하며,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시에도 인정한다.

<별표 4> (개정 2021.08.18., 2021.11.29.,2022.02.21)

4. 일반형 산학업적평가 기준

분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가기준			평점상한
취업지도	취업활동		학과 취업률		취업률(개인별 포함) 따라 점수화			100
			교수추천 취업실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 1명당 30점			500
			산업체방문실적		산업체 방문 × 20점			100
산학협력	산학협력활동		산학관련위원	사업단장, 대표(총괄)책임교수	평점	10	평점 × 근무월수	80
				작성 및 심의위원	평점	20		
				추진(운영)위원	평점	10		
				자체평가위원	평점	20		
			산학협력체결		업체수 × 20점			200
			교내 산학협력행사 참석		건당 × 20점			300
			애로기술지도(산업자문)		건당 × 20점			
			자문		건당 × 20점			
			산학협력협의회		건당 × 20점			
			교원창업		건당 × 20점			
			공동연구장비활용		건당 × 20점			
	연구업적대체인정가능항목※	**다차원인력양성**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업체수 x 20점 현장실습업체 교육생 1인당 x 5점			200
			인턴십 지도		현장실습업체수 x 20점 현장실습업체 교육생 1인당 x 5점			
			캡스톤 디자인 지도		학생수 × 5점			200
		교육활동	산학협력 교육		건당 × 20점			200
			주문식(맞춤형) 교육		건당 × 20점			
			진로취·창업동아리지도		건당 × 20점			
			학생 창업지도(추천)		건당 × 20점			
			경진대회 입상지도		건당 × 20점			
			사업훈련 교육		수강연인원 × 1점			200
					강의시수 × 2점 5점			
		연구활동 및 지식재산권	산업체 공동 연구		건당 × 50점			300
			기술이전		건당 × 50점			
			특허		산정기준 참조			
			실용신안		산정기준 참조			
		연구비	연구비수혜		산정기준 참조			200
			재정지원사업 신청 참여		산정기준 참조			

※ 해당연도 내 취득한 산학업적점수를 연구업적점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업적대체인정가능항목>에 한하여 각 업적항목별 연간 평점상한 한도 내에서 교원 개인별 대체인정 신청 및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 인정 가능

<일반형 산학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개정 2021.11.29.,2022.02.21.,2023.06.19)

1) 취업활동

① 학과 취업률 : 학과 국세취업률 70%를 만점으로 하고, 최대 100점을 인정하며 학과의 모든 전임교원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교양과 전임교원은 학과 전체평균 취업률을 부여한다.)

② 교수 추천 취업실적(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교수 추천을 통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취업 시 1명당 30점을 인정하며, 취업결과보고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자 : 당해연도 2월, 8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 졸업예정자 : 익년도 2월 졸업예정자

③ 산업체 방문실적 : 취업지도를 위한 산업체 방문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산업체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활동

① 산학관련 위원 : 산학협력(처)단에서 위촉(발령)에 따른 위원으로 각 사업별 운영(추진)위원회, 사업계획 작성위원, 자체평가(감사)위원 등을 인정

가) 사업단장 및 대표책임교수 : 사업총괄(교육역량사업단,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학교기업 대표책임교수등)

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의위원 :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운영방안 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 사업별 추진(운영)위원 : 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팀 및 운영위원

라) 자체평가위원 : 사업의 집행 및 운영 점검, 평가 활동 등

② 산학협력체결 :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가족회사로 등록시키고 산학협력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교내 산학협력행사 참석 : 산학협력처(단)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력행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석이 확인된 건에 한하여 인정한다.(개정 2022.02.21.)

④ 애로기술지도(산업자문) 및 자문 : 산업체에 방문하여 애로기술지도, 자문을 수행하거나 활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보고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날짜 활동은 1건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2.02.21.)

⑤ 산학협력협의회 :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참여건당 점수를 인정한다.(개정 2022.02.21.)

⑥ 교원창업 : 교내 창업지원 지침에 따라 교원 창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1개월 이내 발급) 및 재무제표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동연구장비 활용 : 학과장비를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여 건당 점수를 의미한다.

* 공동연구장비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전에 산학협력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활용결과를 산학협력팀에 제출해야 인정한다.(개정 2022.02.21.)

3) 다차원 인력양성

①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지도 : 현장실습 및 인턴십 파견업체로 실습학생 현장지도 방문 활동을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별로 진행되는 학생지도에 대하여 파견업체 발굴에 따른 점수와 업체별로 파견된 학생인원 지도에 대한 점수를 각각 인정한다.

- 현장실습업체는 업체당 20점, 현장실습 교육생 1인당 5점으로 업체점수와 교육생 점수를 합산하여

인정한다.

② 캡스톤 디자인 지도 : 산업체와 연계하여 전공연구 또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한 경우(멘토지도 교수 제외) 혹은 담당 캡스톤 디자인과정의 학생 수를 의미한다.(개정 2022.02.21.)

4) 교육활동

① 산학협력 교육 : 전문계고 또는 산업체와 연계한 정규과정이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재학생 또는 산업체, 전문계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

② 주문식(맞춤형)교육 : 주문식(맞춤형)교육 운영 트랙당 점수를 인정한다.(개정 2022.02.21.)

③ 진로취·창업동아리 지도 : 진로취·창업동아리를 지도한 경우를 의미하며, 동아리수에 대해 점수를 인정한다. 단, 진로취·창업동아리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개정 2022.02.21.,2023.06.19)

④ 학생 창업지도(추천) : 교내 창업지원 지침에 따른 학생창업을 지도 및 추천한 경우를 의미하며, 학생창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1개월 이내 발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진대회 입상 지도 : 지도한 개인 또는 팀이 교내·외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4위 이내 입상 한 경우 인정(예 : 창업, 캡스톤디자인, 기타 산업체와 연계하여 출전한 경진대회 등). 단, 교육업적평가의 입상지도와 중복 인정하지 않음.(개정 2022.02.21.)

⑥ 사업훈련 교육 :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사업의 훈련과정으로 유치한 강좌의 수강학생 수 및 강의시수를 의미한다. 단, 수강학생 수, 강의시수의 산정점수 중 큰 점수로 인정한다.(ex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향상 및 양성교육)

5) 연구활동 및 지식재산권(개정 2022.02.21.)

① 산업체 공동연구 : 산학협력처(단)에서 국고지원 또는 산업체 연구비 지원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결과물(컨텐츠 포함)을 말한다.

②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의미하며, 계약 건수당 점수를 인정한다.

※ 100만원당 1건으로 인정

③ 특허

- 국제특허(200점 인정) : 해외 특허기관에 출원하여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
- 국내특허(150점 인정) : 국내에서 대학 혹은 해당교원의 명의로 획득한 특허로써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국제특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높은 점수 1건으로 인정한다.)

※ 디자인계열의 경우 국제특허와 국내특허를 포함하여 2건으로 제한한다.

④ 실용신안(100점 인정) : 국내에서 획득한 실용신안으로써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

6) 연구비 수혜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 참여(개정 2022.02.21.)

①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탁한 것으로 우리대학에 입금된 연구비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년간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원하는 년도로 총액을 반영한다.

② 이공계열은 100만원 당 3점, 인문·사회계열은 100만원 당 5점, 예.체능계열은 100만원 당 8점을 부여한다. 공동연구일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는 1/(n+1) 인정한다.

③ 재정지원사업 추진위원으로 사업계획서 집필에 참여, 사업신청을 통해 해당사업을 수주한 경우 소단위 사업(1억 이상) 50점, 중단위사업(4억 이상) 80점, 대단위 사업(8억 이상) 100점으로 인정한다.

<별표 4-1> (개정 2021.08.18.,2022.02.21)

5. 산학협력트랙형 업적평가 기준

분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가기준			평점상한
취업지도	취업활동		학과 취업률		취업률(개인별 포함) 따라 점수화			100
			교수추천 취업실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채용 1명당 30점			500
			산업체방문실적		산업체 방문 × 20점			100
산학협력	산학협력활동		산학관련위원	사업단장, 대표(총괄)책임교수	평점	10	평점 × 근무월수	100
				작성 및 심의위원	평점	20		
				추진(운영)위원	평점	10		
				자체평가위원	평점	20		
			산학협력체결		신규 업체수 × 30점			200
			자문		건당 × 20점			300
			애로기술지도		건당 × 20점			
			산학협력행사 참여		건당 × 20점			
			교원창업		건당 × 20점			
			공동연구장비활용		건당 × 20점			
			산학협력협의회		건당 × 30점			100
	연구업적대체인정가능항목※	다차원인력양성	현장실습학기제		업체당 × 20점/학생 당 X 10점			200
			인턴십 지도		업체당 × 20점/학생 당 X 10점			
			캡스톤 디자인 지도		학생수 × 5점			200
			주문식(맞춤형)교육		주문식교육 운영 트랙당 × 50점			200
		교육활동	산학협력 교육		건당 × 20점			300
			진로취·창업동아리지도		건당 × 20점			
			학생 창업지도(추천)		건당 × 20점			
			경진대회 입상		건당 × 20점			
			사업훈련 교육		수강연인원 × 1점/강의시수 × 2점			300
		연구활동 및 지식재산권	산업체 공동 연구		건당 × 50점			500
			기술이전		건당 × 50점			
			특허		산정기준 참조			
			실용신안		산정기준 참조			
		연구비	연구비수혜		산정기준 참조			300
			재정지원사업 신청 참여		산정기준 참조			

※ 해당연도 내 취득한 산학업적점수를 연구업적점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업적대체인정가능항목>에 한하여 각 업적항목별 연간 평점상한 한도 내에서 교원 개인별 대체인정 신청 및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 인정 가능

<산학협력트랙형 산학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개정 2022.02.21.,2023.06.19)

1) 취업활동(개정 2022.02.21.)

① 학과 취업률 : 학과 국세취업률 70%를 만점으로 하고, 최대 100점을 인정하며 학과의 모든 전임교원에게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교양과 전임교원은 학과 전체평균 취업률을 부여한다.)

② 교수 추천 취업실적(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교수 추천을 통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취업 시 1명당 30점을 인정하며, 취업결과보고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자 : 당해연도 2월, 8월 졸업자 및 전년도 8월 졸업자

※ 졸업예정자 : 익년도 2월 졸업예정자

③ 산업체 방문실적 : 취업지도를 위한 산업체 방문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산업체 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활동

① 산학관련 위원 : 산학협력(처)단에서 위촉(발령)에 따른 위원으로 각 사업별 운영(추진)위원회, 사업계획 작성위원, 자체평가(감사)위원 등을 인정

가) 사업단장 및 대표책임교수 : 사업총괄(교육역량사업단,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단, 학교기업 대표책임교수등)

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의위원 :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운영방안 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다) 사업별 추진(운영)위원 : 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팀 및 운영위원

라) 자체평가위원 : 사업의 집행 및 운영 점검, 평가 활동 등

② 산학협력체결 : 신규로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가족회사로 등록시키고 산학협력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자문 : 산업체에 방문하여 자문 활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날짜 활동은 1건으로 인정한다.)

④ 애로기술지도 : 산업체에 방문하여 애로기술지도로 활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날짜 활동은 1건으로 인정한다.)

⑤ 산학협력행사참여 : 산학협력처(단) 주관 행사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참여건당 점수를 인정한다.(개정 2022.02.21.)

⑥ 교원창업 : 교내 창업지원 지침에 따라 교원 창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1개월 이내 발급) 및 재무제표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21.)

⑦ 공동연구장비 활용 : 학과장비를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여 건당 점수를 의미한다.

※ 공동연구장비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전에 산학협력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활용결과를 산학협력팀에 제출해야 인정한다.(개정 2022.02.21.)

⑧ 산학협력협의회 :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참여건당 점수를 인정한다.

3) 다차원 인력양성

①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지도 : 현장실습 및 인턴십 파견업체로 실습학생 현장지도 방문 활동을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별로 진행되는 학생지도에 대하여 파견업체 발굴에 따른 점수와 업체별로 파견된 학생인원 지도에 대한 점수를 각각 인정한다.

※ 업체당 20점, 교육생 1인당 10점으로 업체점수와 교육생 점수를 합산하여 인정한다.(개정

2022.02.21.)

② 캡스톤 디자인 지도 : 산업체와 연계하여 전공연구 또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한 경우(멘토지도 교수 제외) 혹은 담당 캡스톤 디자인과정의 학생 수를 의미한다.

③ 주문식(맞춤형)교육 : 주문식(맞춤형)교육 운영 트랙당 점수를 인정한다.(개정 2022.02.21.)

4) 교육활동(개정 2022.02.21.)

① 산학협력 교육 : 전문계고 또는 산업체와 연계한 정규과정이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재학생 또는 산업체, 전문계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우

② 진로취·창업동아리 지도 : 진로취·창업동아리를 지도한 경우를 의미하며, 동아리수에 대해 점수를 인정한다. 단, 진로취·창업동아리 활동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개정 2023.06.19.)

③ 학생 창업지도(추천) : 교내 창업지원 지침에 따른 학생창업을 지도 및 추천한 경우를 의미하며, 학생창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1개월 이내 발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진대회 입상 지도 : 지도한 개인 또는 팀이 교내·외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4위 이내 입상 한 경우 인정. 단, 교육업적평가의 입상지도와 중복 인정하지 않음.

(예 : 창업, 캡스톤디자인, 기타 산업체와 연계하여 출전한 경진대회 등)

⑤ 사업훈련 교육 :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훈련과정 유치 강좌 수강학생수 및 강의시수를 의미한다.

5) 연구활동 및 지식재산권 (개정 2022.02.21.)

① 산업체 공동연구 : 산학협력처(단)에서 국고지원 또는 산업체 연구비 지원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결과물(컨텐츠 포함)을 말한다.

②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의미하며, 계약 건수당 점수를 인정한다.

※ 100만원당 1건으로 인정

③ 특허

-국제특허(200점 인정) : 해외 특허기관에 출원하여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

-국내특허(150점 인정) : 국내에서 대학 혹은 해당교원의 명의로 획득한 특허로써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

(동일한 내용으로 국제특허를 취득하였을 경우 높은 점수 1건으로 인정한다.)

※ 디자인계열의 경우 국제특허와 국내특허를 포함하여 2건으로 제한한다.

④ 실용신안(100점 인정) : 국내에서 획득한 실용신안으로써 공고번호를 획득한 것을 인정한다.

6) 연구비 수혜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 참여(개정 2022.02.21.)

①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탁한 것으로 우리대학에 입금된 연구비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되, 1000만원 당 200점을 인정한다.

② 재정지원사업 추진위원으로 사업계획서 집필에 참여, 사업신청을 통해 해당사업을 수주한 경우 소단위 사업(1억 이상) 100점, 중단위사업(4억 이상) 200점, 대단위 사업(8억 이상) 300점으로 인정한다.

학년도

교수업적평가표 보고서

(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소속 : 학부 학과

직명 :

성명 : (인)

명 지 전 문 대 학

<별표 5>

6. 연구년, 질병으로 인한 휴직, 파견, 출산휴가자 교수업적평가 반영 방법

발령일	6개월 발령자 평가 반영 방법	1년 발령자 평가 반영 방법	비고
3월1일자	1월,2월,복귀후 9월~12월업적을 인정하며 2배하여 년평가 점수 반영 [1,2,9,10,11,12] = 6개월	직전년도 연간업적을 연구년 해당기간 업적으로 반영[12월]	
9월1일자	1월~8월까지의 업적을 2배하여 년평가점수 반영[8개월]	연구년 발령전 1월~8월까지의 업적을 2배하여 당해연도 업적으로 반영하고[8개월], 연구년 복귀후 9월~12월까지의 업적을 2배하여 복귀년도 업적으로 반영[4개월]	

<별지 1 서식>

교육업적내역서

1. 강의실적

학 기	교육과정	개설강좌명	학점	시간	요일	휴강	사이버	계획서	성적입력

2. 강의실적(온라인)

학 기	평가항목	교육과정	개설강좌명	실적내용	점 수

3. 학생지도실적

년 도	평가항목	학생지도내역	점 수

<별지 2 서식>

연구업적내역서

업적구분	년월일	연구업적분류	연구업적항목	연구업적명	공동	점 수

<별지 3 서식>

봉사업적내역서

평가항목	년도	구 분	봉사활동명	점 수

<별지 4 서식>

산학업적내역서

1. 취업실적

평가항목	년 도	취업지도내역	점 수

2. 산학협력실적

평가항목	년도	구 분	산학활동명	점 수

<별지 5 서식>

교 육 업 적 평 가 표

피평정자	소 속	학부		학과
	직 명		성 명	(인)
업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점	비고
강의	강의시수 및 휴, 보강	강의담당시수		
		강의일수		
		휴강 및 보강		
	강의진행	강의계획표 입력, 제출		
		담당교과목수		
		성적입력, 성적표 및 출석부 제출		
		사이버강의		
		강의자료 온라인탑재 및 강의공개		
		야간강의 및 정규이외의 교육과정강의		
		직무역량 교과목 강의		
	강의평가	강의평가 점수		
		강의평가 감점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법 개발 및 활용		
학생지도	학생상담 및 지도	지도교수		
	입상지도	경기, 경연 공모, 작품대회 등		
합 계				

<별지 6 서식>

연 구 업 적 평 가 표

피평정자	소 속	학부		학과
	직 명		성 명	(인)
업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 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점	비 고
논 문 및 학술활동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일반학술지 게재 논문		
		국내기타학술지 게재 논문		
		박사학위논문		
		대학 논문집		
	학술발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학술대회 발표논문		
	위탁연구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보고서, 교내연구보고서		
	학술수상	국제학술상		
		국내학술상		
저 서 및 역 서	학술저서	국제 전문 학술저서		
		국내 전문 학술저서		
	저서 및 역서	대학 전공 교재 및 번역서		
		편저 및 저서개정판		
합 계				

<별지 7 서식>

봉 사 업 적 평 가 표

피평정자	소 속	학부		학과
	직 명		성 명	(인)
업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 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점	비 고
교내 봉사	보직활동	교무위원, 부속기관장, 연구소장 및 간사, 학과장, 전공주임, 부설센터소장 및 간사, 부단장 등		
	위원회등 활동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연구회 회원		
	학생특별지도	튜터링 지도, 학생단체(동아리) 지도교수		
		학교 행사 참여		
	학습활동	-강의 : 교내 학술강연 및 교양강좌강연 -참석 : 교내에서 각종연수 및 특강참석		
		교내 예배 참석		
		교내 각종 성희롱, 폭력 예방교육 참석		
	입학활동	입학감독 및 진행위원		
		학교 및 학과홍보 활동		
	기여활동	대학발전 및 대외교류 사업 참여, 학과발전사업 및 행사 참여		
교외 봉사	학회활동	국제 또는 국내학회 임원, 국제 또는 국내학회 위원		
		국제 또는 국내학술회의 사회, 토론, 발표		
	사회교육활동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활동		
		교외 초청 강연, 발표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회세미나 참석		
	사회봉사활동	- 고시출제, 심사, 평가채점 - 교양서 저술 및 정기간행물 기고 - 언론매체기고 및 출연 -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봉사		
수상	포상 및 표창	국가기관표창, 지자체표창, 명지학원표창		
합 계				

<별지 8 서식>

산 학 업 적 평 가 표

피평정자	소 속	학부		학과
	직 명		성 명	(인)
업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점	비고
취업 지도	취업활동	학과취업률		
		교수추천 취업실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산업체 방문실적		
산학협력	산학협력활동	산학관련위원		
		산학협력체결		
		교내 산학협력행사 참석		
		애로기술지도(산업자문)		
		자문		
		산학협력협의회		
		교원창업		
		공동연구장비활용		
	다차원인력양성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지도		
		캡스톤 디자인 지도		
	교육활동	산학협력 교육		
		주문식(맞춤형) 교육		
		창업동아리 지도		
		학생 창업지도(추천)		
		경진대회 입상지도		
		사업훈련 교육		
	연구활동 및 지식재산권	산업체 공동 연구		
		기술이전		
		특허		
		실용신안		
	연구비	연구비수혜		
		재정지원사업 신청 참여		
합 계				

<별지 8-1 서식> (개정 2021.08.18.)

산 학 업 적 평 가 표(산학협력트랙)

피평정자	소 속	학부		학과
	직 명		성 명	(인)
업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점	비고
취업지도	취업활동	학과 취업률			
		교수추천 취업실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산업체방문실적			
산학협력	산학협력활동	산학관련 위원	사업단장, 대표(총괄)책임교수		
			작성 및 심의위원		
			추진(운영)위원		
			자체평가위원		
		산학협력체결			
		자문			
		애로기술지도			
		산학협력행사 참여			
		교원창업			
		공동연구장비활용			
		산학협력협의회			
	다차원 인력 양성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지도			
		캡스톤 디자인 지도			
		주문식(맞춤형)교육			
	교육활동	산학협력 교육			
		창업동아리 지도			
		학생 창업지도(추천)			
		경진대회 입상			
		사업훈련 교육			
	연구활동 및 지식재산권	산업체 공동 연구			
		기술이전			
		특허			
		실용신안			
	연구비	연구비 수혜			
		재정지원사업 신청 참여			

종 합 평 가 서

1. 피평정자

소 속	학부		학과
성 명		직 명	

2. 평정표

평정영역	평 정 항 목	평 정
교육업적	<별표 1>의 내용	
연구업적	<별표 2>의 내용	
봉사업적	<별표 3>의 내용	
산학업적	<별표 4>의 내용	
합 계		
적 격 여 부	적 격	부 적 격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 : 인

위와 같이 교수업적을 평가함.

20 년 월 일

교수업적평가위원장 (인)